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1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 · 박정현 · 윤준병
김태선 · 박 정 · 전용기
이정현 · 이광희 · 김현정
이용선 · 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안 제8

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제8조의3(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대지급금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그 인적사항 및 변제금 미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변제금미납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제금 미납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사업주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5. (생략) ② ~ ⑧ (생략) <u><신설></u>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u>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u>-----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u>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해당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3(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대지급금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그 인적사항 및 변제금 미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변제금미납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및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
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 (생략)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 아. (생략)

7의3. ~ 12.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
동안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
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근로복지공단에-----

가. ~ 아. (현행과 같음)

7의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u>
---	---